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 공제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공공사 시작 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여, 당해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책정하고, 원·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며,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근로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증금을 받은 근로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퇴직공제부금을 12개월(252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12.2~)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 직접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 8. 26.)”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대책('12. 5. 7.)”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관계부처 및 건설협회·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근로자 아닌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 8월 17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공연이나 방송을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18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7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제도가 도입되어도 예술인이 산재보험 관련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술 분야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법인(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 사무를 대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한편,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보완한다.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예술인 등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고령의 산재장애인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강정보, 주민번호 등 개인의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 잔액의 반납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